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09. 9. 1
제안자 : 운영위원장

1. 제안경위

2009. 9. 1 제14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윤동현 위원 외 3인의 서면동의로 발의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채택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제안이유

지방의원의 직무수행상 윤리성·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2009. 4. 1)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
- 나. 의원의 겸직사항에 대한 신고·변경신고 절차와 방법을 규정(안 제5조 제1항·제2항, 별지 제1호 서식)
- 다. 의장에게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 요구권 부여(안 제5조 제3항)
- 라. 의원의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의 범위 설정(안 제6조)

4.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제6항

5. 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6.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검직신고) ①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검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해야 한다.

③의장은 검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검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6조 신규 규정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역구	
성명	한글			비례대표	
	한자		생년월일		
겸직내용	기관·단체명				
	직위		재직기간		
	보수	(택일) 연월	원원	전화번호	
	주소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 귀하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 (2009.4.1개정, 법률 제9577호)

제35조 (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9.4.1>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영업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신설 2009.4.1>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9.4.1>

④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36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09.4.1>

⑤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4.1>

⑥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9.4.1>

[시행일 : 2009.10.2] 제35조 제3항, 제35조 제6항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 (일부개정) 2009. 2. 5 조례 제736호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건설위원회(개정 '98.07.08, '02.5.15)

가. 감사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신설 '97.03.15, 개정 '98.11.05)

나. 행정관리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97.03.15, '98.11.05)

다. 기획재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97.03.15, '98.11.05)

라. 건설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신설 '98.07.08, 개정 '98.11.05)

3. 복지도시위원회(개정 '98.07.08, '02.5.15)

가. 주민생활국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98.11.05, '07.1.2)

나. 도시관리국소관에 속하는 사항(신설 '98.07.08, 개정 '98.11.05)

다. 보건소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삭제('04.09.25)

4. 삭제('98.07.08)

③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상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정한다.